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출연목적
 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(2017.2.17.)된 기관으로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출연 예정금액: 1,469,879천원 (도비100%)
 - 출연근거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 - 재단운영비: 1,469,879천원 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-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9년 (A)	2020년 (B)	2021년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204,948	1,204,948	1,469,879	264,931

5. 검토의견

○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.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충북여성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음.

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,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,
-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 연구의 거점기관으로서 존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함.
- 또한, 전년과 대비하여 26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 파견공무원의 복귀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등 인력 증원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2020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*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므로 향후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* 일반회계 세입예산 2,329,780천원 中 순세계잉여금 249,642천원(10.7%)

참고 1

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

□ 충북여성재단 연도별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0				2021			
	계	출연금	수탁사업	기타	계	출연금	수탁사업	기타
합계	2,138	1,205	745	188	2,334	1,470	757	107
국비	403		403		441		441	
도비	1,547	1,205	342		1,786	1,470	316	
기타	188			188	107			107

※ 당초예산 기준 작성

□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577		
운영재원	1,560		
인건비	796	- 재단직원 13명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 등)	
경비	255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509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예비비	17		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